

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[취락지구]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

2007. 4. 26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4월 10일 ·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7년 4월 2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(2007. 4. 26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도시관리국장 이 한 구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 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 중 해제기준(주택 100호 이상)에 미달하는 평창동 260번지 일대의 3개소의 소규모 취락지역에 대하여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지정 기준에 의거 「취락지구」로 지정 · 관리함으로써
-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(취락지구)지정(안)조서

구분	도면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 분	위 치	제한내용	면적 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신설	①	취락지구 (평창동)	집단 취락지구	평창동 260일대	취락지구 에 대한 특례 (법 제14조)	15,033	-	취락 형태: 계획형
신설	②	취락지구 (부암동)	집단 취락지구	부암동 100일대		12,208	-	취락 형태: 자연형
신설	③	취락지구 (부암동)	집단 취락지구	부암동 191-6일대		11,110	-	취락 형태: 자연형
신설	③	취락지구 (홍지동)	집단 취락지구	홍지동 129일대		15,395	-	취락 형태: 자연형

3. 質 疑 및 答 辯 要 旨 : 생 략

4. 意 見 採 擇

- 홍지동 129번지 일대 취락지구지정(안)에서 제외된 홍지동 122일대 및 부암동 388-1일대는 지역 여건상 소규모 필지로서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, 지구경계가 부정형으로 이루어져 있어
- 향후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한 정비사업시행 시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는 토지의 정형화 및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락지구지정 시 추가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.

5. 其 他 必 要 한 事 項 : 없 음

6. 審 査 結 果 : 의견채택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채택대로 가결함)